



일회용품 사용규제 2년간 유보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1. 서론

유통업체들과 음식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제한은 현재와 같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기불황의 시점에서 단순히 자원의 절약 등을 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급격한 매출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직접 관련업계는 물론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기업경영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인 바 최소한 이를 2001년까지 유보해야 할 것이다.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기업들은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극도의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경영과 구조조정, 저가판매,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경영최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관련 업체들 역시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법의 기본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련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일정기간의 홍보와 계몽기간을 거쳐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느정도 정착되는 한편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기미를 나타낼 것으로 예견되는 2001년까지 규제를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건의사항

2-1.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유보

현재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도 구조조정이 마무리, 저성장 추세 지속 등으로 인하여 경영환경은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이컵, 비닐봉투 및 도시락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지난 IMF이후 매출감소로 극심한 경영압박을 겪고 있는 형편이며 이번 조치의 본격시행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도산 또는 폐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 대부분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관행) 개선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정도의 계몽 또는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백화점 등 관련 업계의 경우 봉투판매를 위한 추가인원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상당한 비용의 증가를 떠 안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추가 비용부담(1회용 봉투구입, 용기구입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2-1. 개선의견

따라서 업계가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시간 등의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경제의 회복이 어느정도 가시화 될 시점으로 예상되는 2001년까지 이번 조치를 2년간 유예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내용. 2.18 시행

▶음식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규제

1)규제대상: 컵(종이·합성수지), 용기·접시(종이·합성수지·알루미늄박),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 휴게음식점의 청량음료, 1회용컵, 아이스크림 용기

2)비규제대상: 전분이쑤시개(단, 나무이쑤시개는 출입구에서 제공하는 경우 허용), 커피젓는 막대, 수저싸는 종이, 휴지·물수건, 종이로 만든 식탁깔개 등 (*규제제외사항: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조화객에게 음식물 제공시, 음식물 배달 및 자동판매기용,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백화점·쇼핑센터(33㎡이상 매장) 등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1)규제대상: 봉투(종이·비닐), 쇼핑백(비닐·종이로서 별도 손잡이가 있는 것),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2)비규제대상: 생선·육류·채소 등 물기있는 제품을 담은 합성수지 봉투, 채소·과일 등 일정단위 판매시 사용되는 합성수지

(*규제제외 사항: 습기있는 제품에는 합성수지 제품 허용)

▶도시락제조업(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

1)규제대상 : 합성수지제 도시락

2)비규제 대상 : 국물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용기

(*규제제외 사항: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장기유통을 위한 밀봉포장 및 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든 제품은 제외)

3. 편의점의 특수한 영업환경을 감안, 1회용품규제대상에서 제외 요망

3-1. 건의사항

편의점은 종합소매업태이지만 생활용품 판매 외에 간이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간단한 식사대용품(김밥, 햄버거, 만두, 컵라면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편의점의 경우 컵라면, 청량음료컵 등이 혼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분리수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음식판매 전문업종이 아니므로 일반 음식점에서와 같은 다회용품들을 설비하기가 어렵다.

또한 편의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리장 또는 세척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점포규모(약 5·20평)로 볼때 신규설비는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신규채용 등의 부담이 따른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장비구비를 휴대하는 소비자가 아닌 바쁜 직장인, 공부하는 학생, 야간근무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제도 시행으로 편의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2. 개선의견

편의점 등 1회용 봉투 사용량이 많지 않고 장

바구니 이용고객이 거의없는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전면적 사용금지 대상에서는 제외시켜 주어야 할것이다.

재인 대체용기 개발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매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회용품의 제한을 일시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4.민관합동으로 환경친화적인 저가의 대체 일회용품 적극 개발

4-1. 권의사유

현재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도시락 및 국·물을 담기 위한 용기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장기간 유통을 위한 밀봉포장 및 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든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각 유통업체들의 경우 다양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일 저렴한 합성수지용기 등을 안쓰고 종이용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개당 200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서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신소

4-2. 개선의견

현재와 같은 침체된 경기로 소비자와 유통업자, 각종 용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현실을 도외시한 채 우리가 먼저 선진국형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각종 규제의 강화 이전에 먼저 환경친화적(공해유발 방지 등)이면서 재생가능하고 가격 역시 저렴한 대체용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때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전면적 시행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사)한국포장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포장협회는 총 1백여개사에 이르는 회원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7개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포장업계의 현안이나 대정부 건의 등 각 분야의 의견을 모아내어
 포장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유익한 선진 기술 및 정보 제공과 상호연계의 고리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이 되십시오.

회원가입 문의 및 신청
 TEL : 02-835-9041